

1. 개정이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적립금의 합리적 운용을 위하여 가입자가 적립금 운용방법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정한 운용방법에 따라 적립금이 운용될 수 있도록 사전지정운용제도를 도입 하는 등의 내용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개정(법률 제18752호, 2022. 1. 11. 공포, 2022. 7. 12. 시행)됨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구성, 사용자에게 대한 사전지정운용방법 제시방법 등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심의위원회 구성(안 제8조 신설)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고용노동부 차관으로 하고 고용노동부 및 금융위원회에서 퇴직연금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 퇴직연금 관련 전문가로서 요건을 갖춘 사람 등 10명 이내로 위원을 구성하도록 하며, 심의위원회 의결 절차 및 위원 해촉 사유 등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나. 사용자에게 대한 사전지정운용방법 제시방법(안 제8조의2 신설)

퇴직연금사업자가 가입자에게 영제13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를 영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방법으로 제공하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제9조부터 제14조까지로 하고, 제8조 및 제8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심의위원회 구성) ①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차관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제3호의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도록 한다.

1. 퇴직연금 관계 업무를 담당하는 고용노동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2. 퇴직연금 관계 업무를 담당하는 금융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3. 퇴직연금 관련 전문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사람

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노동, 경제, 경영 또는 금융 관련 분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

나. 노동, 경제, 경영 또는 금융 관련 분야의 연구기관 및 공공기관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소속되어 3년 이상 근무
하였을 것

다. 금융 관련 기관에서 퇴직연금, 자산운용, 금융상품평가 또는 위
험관리를 담당하는 직에 3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

③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제2항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제3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의2(사용자에 대한 사전지정운용방법 제시방법) 법 제21조의2제3
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영 제13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를 영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방법으로 제공하

는 것을 말한다.

제14조(종전의 제13조) 중 “제9조”를 “제10조”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8조(심의위원회 구성) ①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u> <u>②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차관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제3호의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도록 한다.</u> <u>1. 퇴직연금 관계 업무를 담당하는 고용노동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u> <u>2. 퇴직연금 관계 업무를 담당하는 금융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u> <u>3. 퇴직연금 관련 전문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사람</u> <u>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노동, 경제,</u>

경영 또는 금융 관련 분야
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3
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

나. 노동, 경제, 경영 또는 금
융 관련 분야의 연구기관
및 공공기관 또는 특별법
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에 소속되어 3년 이상 근
무하였을 것

다. 금융 관련 기관에서 퇴직
연금, 자산운용, 금융상품
평가 또는 위험관리를 담
당하는 직에 3년 이상 근
무하였을 것

③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
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
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
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
로 의결한다.

⑤제2항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
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제3
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u>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u> <u>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u> <u>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u> <u>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u> <u>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u>
<u><신 설></u>	<u>제8조의2(사용자에 대한 사전지정 운용방법 제시방법) 법 제21조의2제3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영 제13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를 영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방법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u>
<u>제8조 ~ 제12조 (생 략)</u>	<u>제9조 ~ 제13조 (현행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와 같음)</u>
<u>제13조(규제의 재검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9조에 따른 위험자산의 범위 및 운용기준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u>	<u>제14조(규제의 재검토) -----</u> <u>----- 제10조-----</u> ----- ----- -----

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 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 치를 해야 한다.	----- ----- -----.
--	-----------------------------------